

광주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20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박강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장정희, 김수지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8. 19.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가합5598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C 주식회사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채권에 관하여 2019. 4. 26.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4. 26.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5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7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래 표와 같이, 원고는 2015. 4. 30.부터 2018. 2. 27.까지 C에 합계 65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행위’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하며, 각 대여금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각 공정증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하고, 각 공정증서는 순번으로 특정한다)가 작성되었다.

○ 제2면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대여내용			공정증서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순번	작성일자	공정증서상 채무액(원)
1	2015. 4. 30.	100,000,000	1	2018. 3. 2.	355,000,000
2	2015. 6. 30.	50,000,000			
3	2015. 7. 31.	30,000,000			
4	2015. 12. 31.	50,000,000			
5	2017. 3. 20.	25,000,000			
6	2017. 9. 18.	100,000,000			
7	2017. 11. 30.	100,000,000	2	2018. 2. 14.	100,000,000
8	2018. 2. 27.	200,000,000	3	2018. 3. 2.	200,000,000

- 제4면 4행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5억 원”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하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한다.
- 제5면 5행의 “2017. 11. 30.에서 2018. 2. 22.사이에”를 “2015. 4. 30.에서 2018. 2. 27. 사이에”로 고쳐 쓴다.
- 제6면 하2행부터 제7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액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한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대여행위는 대규모 자산의 차입에 해당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 C은 이 사건 대여행위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C은 원고에게 나주시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4억 원에 매도하며, C의 근저당권부 채무 1억 9,5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되 이를 C이 변제하기로 정하여 위 1억 9,500만 원에 이자 등을 더한 2억 원에 관하여 순번 3번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원고에게 4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에 대한 순번 3번 공정증서상 채무 및 별도의 2억 원의 채무와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순번 3번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 금액은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소외 I, J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자본금은 2014. 12. 30. 8억 1,000만 원이었고, 2015. 12. 3. 13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바, 위와 같은 C의 규모에 비추어 위 각 대여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그 재산의 차입을 G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행위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대여행위가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고 C이 이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2018년 2월 내지 3월에 작성되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2019. 7. 16. 발생한 것인바, 원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인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2014. 3. 21. 액면금 1억 4,800만 원, 2014. 5. 28. 액면금 6,000만 원, 2014. 6. 5. 액면금 1억 4,500만 원의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8. 2. 27. 'C상환'의 명목으로 196,369,600원을 지출한 사실, C이 소유하던 나주시 H 지상 건물에 관하여 K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8. 2. 27.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C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2018. 3. 2. 채무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순번 3번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을나 제11, 1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C에 대한 약 4억 원(위 각 어음공정증서상 채무 합계 3억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7.까지의 지연이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나주시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C이 부담하던 약 2억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C로부터 순번 3번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I 명의의 계좌로 2015. 6. 30. 4,500만 원, 2015. 7. 31. 3,000만 원, 2015. 12. 31. 5,000만 원을(순번 2 내지 4번 대여금), J 명의의 계좌로 2017. 11. 30. 1억 원을(순번 7번 대여금)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인데(G은 2019. 9. 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I는 G의 처형으로 당시 C의 사내이사였고, J은 G의 처남으로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점, C은 2015. 6. 30. 원고에게 순번 2번 대여금에 관하여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로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각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순번 2 내지 4, 7번 대여금의 채무자가 I 및 J 개인이라고 인정할 반대 자료가 없는 점(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대여금의 채무자는 C이고, 단지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위 각 대여금을 I 및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박정훈, 판사 성충용, 판사 위광하

별지

채권 목록

C 주식회사가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070호 가치분이의 사건의 담보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241호로 공탁한 992,000,000원의 회수청구권. 끝.

